

전공 평가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 전공평가(이하 “평가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전공 간 경쟁시스템을 통하여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대학 주요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외부기관에 의한 대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(2020.2.25.개정)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전공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공평가위원회를 둔다. (2020.2.25.개정)

② 전공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하며,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(2017.8.31.개정), (2020.2.25.개정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공평가를 위한 규정 제·개정 (2020.2.25.개정)
2. 전공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(2020.2.25.개정)
3. 전공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(2020.2.25.개정)

제2장 평가 운영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2조에 규정된 전공에 적용한다. (2020.2.25.개정)

제4조(평가주기) ① 평가주기는 매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실시한다.

②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되, 최근 3년간 데이터를 적용한다.

제5조(평가영역 및 지표) 평가의 영역 및 지표는 대내·외 경쟁력 평가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한다.

제6조(평가방법 및 절차) ① 평가는 대학정보공시자료 및 교내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정성평가를 할 수 있다.

② 평가 세부 절차는 전공평가 세부 지침에 따른다. (2020.2.25.개정)

제7조(감정사유) 전공평가 시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정사유가 될 수 있다.

(2020.2.25.개정)

1. 기타 대학 이미지에 부정적 결과를 끼친 경우

제8조(평가결과의 반영)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에 반영할 수 있다.

1. 전공구조조정 (신입생 모집중지 및 통폐합 포함) (2020.2.25.개정)
2. 교원업적평가
3. 전공별 연구비 및 연구년 대상자 선정 자료 (2020.2.25.개정)
4. 신임교원 총원
5. 예산편성
6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7. 학교설립 이념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